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I.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10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II. 입찰가격	1. 입찰가격		55	평점계산식 참조
III.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5~ -5	라. 고용창출 항목의 ①일 자리 창출 우 수기업의 경 우 기타 심 사항목별 평 점 합계(배점 한도 +5~5) 와 합산하여 평가 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 - 다만, 산업 재해발생 심 사항목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 점 한 도 는 +3~5점 적용
IV.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 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 I.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가점	등 급	평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외)/추정가격]	5.0	2.0	A.100% 이상	3.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B.60%이상~100% 미만	2.0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외)/추정가격]			C.30%이상~60%미만	1.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D.5%이상~30%미만	0.5
창업기업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외)/추정가격]	5.0	3.0	A.100% 이상	2.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B.60%이상~100% 미만	1.5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외)/추정가격]			C.30%이상~60%미만	1.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D.5%이상~30%미만	0.5
중기업 또는 대기업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외)/추정가격]	5.0	-	A.100% 이상	5.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B.70%이상~100%미만	4.0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외)/추정가격]			C.50%이상~70%미만	3.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D.20%이상~50%미만	2.0
					E.5%이상~20% 미만	1.0
					A.100% 이상	1.5
					B.70%이상~100%미만	1.25
					C.50%이상~70%미만	1.0
					D.20%이상~50%미만	0.75
					E.5%이상~20% 미만	0.5

※ [주]

-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 ②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서)(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이하 같다.)
- ④ 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제6조제②항 제1호 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 ⑤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2.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5.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6. 5호에도 불구하고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비율이 동일)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실적 평가에 유리한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 2. 기술능력

###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등급		평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 우수	9.8
T3+, T3, T3-	우수수준	9.6
T4+, T4, T4-	양호 수준	9.4
T5+, T5, T5-	보통이상	9.2
T6+, T6,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보통이하	8

#### ※ [주]

-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 ④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물품 구매입찰은 입찰자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3.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 [주]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 ④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II.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circ \text{ 평점(점)} = 55 - 2 \times \left| \left( \frac{90}{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Ⅲ. 신인도(배점한도 +5 ~ -5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